

[별첨 1]

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(설명자료)

1. 서 론

-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 규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규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둠.
- 이를 위해 퇴직연금 규제체계를 연금제도의 도입, 연금제도의 운용, 연금제도의 종결 등과 같이 프로세스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, 그 특징을 외국과 비교·분석하여 한 후 퇴직연금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함.

2. 규제 내용 및 트렌드

- OECD는 연금규제의 목적과 회원국이 연금규제를 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적정수준의 적립기준 마련, 수급권 보호 관련 공시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음.
- 퇴직연금규제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·사용자·연금사업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.
- 퇴직연금규제는 도입 관련 규제, 운용 관련 규제, 종결 관련 규제와 같은 제도운영 프로세스(Process)별로 구분할 수 있음.

<표 요약> 제도 운영 프로세스별 규제

구 분	규제수단	세부내용
도입 관련 규제	계산기초율 관련 규제	보험요율 및 준비금 산출과 관련된 계산기초율의 설정 등
	진입 관련 규제	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계약체결요건(자격요건 포함) 등
	기여 관련 규제	보험요율 기여방식(최소, 추가기여의무 포함), 기여제한 및 상한 등
운용 관련 규제	수탁자책임 관련 규제	기업, 연금사업자, 운용사 등에 대한 충실, 주의, 자산배분, 정보관리의무 등
	자산운용 관련 규제	양적규제 및 질적규제, 분산투자규제, 자기 투자규제, 총량규제, 의결권지분제한규제 등
	재무건전성 관련 규제	재정검증, 재정주체, 재계산 등의 사전적 재무건전성규제(사후적재무건전성규제도 포함)
종결관련 규제	이전·취소 관련 규제	기업 및 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이전 (계약이전 및 제도이전 포함)
	폐지·청산관련 규제	기업 및 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청산(연금지급보증장치연계)

□ 선진국은 대체로 퇴직연금 도입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, 운용 관련 규제 및 종결 관련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규제정책을 수립함.

- 즉 계산기초율 설정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입장벽은 최대한 낮추면서도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, 퇴직연금 종결 관련 규제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향을 보임.
- 다만 퇴직연금 규제완화의 보완조치차원에서 정형화된 수탁자책임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제3자적 감시기능 등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연금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.
- 특히 자율적인 퇴출로 인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퇴직연금제도의 종결관련 규정이 엄격해 지고 있는 추세임.

3. 제도도입 관련 규제

- 요율 관련 규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연령구조, 기업의 자금여력 등 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계산기초율 산정을 연금계리사 등이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음.
 - 미국은 최소적립금 산출이율 등과 같이 건전성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산기초율에 대해서는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, 다양한 사망률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사망률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.
 - 반면, 우리나라는 예정이율이 다양화되지 않고 퇴직연금사망률로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.
- 진입 관련 규제의 경우, 대체로 선진국은 엄격한 인적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, 우리나라는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적·물적·재무건전성 요건 모두 느슨한 규제체계를 보임.
 - 일본은 연금사업자의 적절성을 심사·검증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.
 - 미국도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에 의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고 있지만, 신탁계약에서 은행이 자행예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.
 - 신탁계약이라는 본래 특성에 맞게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사업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.
- 기여 관련 규제의 경우, 미국은 부담금 기여의 주체가 근로자인 반면, 일본은 기여의 주체가 기업이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기여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고 있음.
 - 미국은 현물기여는 인정하면서도 기여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최대한 자율은 인정하되, 책임은 철저히 지우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채택함.
- 결국, 제도도입 관련 규제는 탄력적인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한편, 근로자 수급

권과 연금재정 안정성, 근로자의 이익 상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특징임.

4. 제도운용 관련 규제

-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의 경우 선진국은 수탁자와 근로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비해 정형화된 수탁자책임 규정을 두고 있으며, 위반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.
 - 즉, 수탁자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, 퇴직연금 운용관련 의무, 즉 보고·신고·제출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사용자에 대한 수탁자책임이 상대적으로 취약함.
 - 선진국은 수탁자책임 위반시의 제재조치 강화와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적용 등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수탁자책임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매우 낮고 수탁자책임 위반시 근로자가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장치가 존재하지 않음.
 - 미국·일본 등은 근로자와 수탁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적 감시기능장치가 퇴직연금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계리개념의 미도입 등으로 인해 수탁자의 책임을 감시할 제3자적 감시기능장치가 마련되지 않음.
-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체로 자율규제를 지향하여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양적규제를 지향하는 점이 특징임.
 - 즉, 법적·제도적인 규제완화 보완조치와 더불어 연금재정의 악화방지를 위해 리스크감독차원에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.
-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의 경우 선진국 및 우리나라 모두 수급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각국마다 규제의 강도 및 수단 면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.

-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 추세에 맞추어 적기시정 조치를 마련하였지만 선진국에 비해 규제의 강도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.
- 즉, 연금지급보장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연금지급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선진국의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.

5. 제도종결 관련 규제

- 제도종결 관련 규제를 비교·분석한 결과,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저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종결과 관련된 엄격한 제반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- 일본 등은 퇴직연금 관련 법률에서 제도이전 및 취소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명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이전 이외에 자발적인 이전(제도간의 이전)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.
-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과 개정 법률안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임.
- 주요 선진국은 제도 폐지에 관한 요건 및 기준이 매우 엄격한 반면,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자발적 폐지 금지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폐지·중단시의 처리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음.
- 즉,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종결 관련 규제를 관련법상에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의 경우 폐지 이후의 단계인 청산시 절차 등과 관련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음.

6. 규제방향

- 제도도입 관련 규제
- 계산기초를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보다 정밀한 계산기초를 산출을 위해 산업별 또는 직종별 근로자 정보를 DB화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.

- 장기적으로는 연금계리사의 책임하에 개별회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계산기초율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출 목적 별 요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.
- 진입 관련 규제의 경우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연금계리 인력 중심의 인적 기준 강화와 신탁제도와 배치되는 자행예금 예외적용, 금융회사 도산시 방화벽 작동 등을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
- 장기적으로 연금사업자 등록의 적정성 심사검증체계의 도입과 고유자산과 신탁자산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는 신탁계약체계를 지향할 필요

□ 제도운용 관련 규제

-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의 경우 연금사업자의 수탁자책임 강화, 수탁자 의 배상책임보험도입, 법률 위반시 제재조치의 현실화 등이 필요함
- 장기적으로는 보고·신고·제출의무 관련 규정의 보완,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및 범위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.
-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경우 자율규제방식으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우선 사전에 수탁자책임과 수급권 보호장치 등과 같은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, 사전에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이 절실함.
-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의 경우 과거 근무채무에 대한 적립금 수준 상향조정, 적립부족액을 납입하지 않는 등 이행조치 위반시 법률적 제재조치 마련, 연금재정의 재계산 기간 조정, 연금계리사 제도 조기 도입, 예금보험제도 현실화 등의 개선이 필요

□ 제도종결 관련 규제

- 선진사례를 참고로 하여 타 제도간 이전규정을 신설하고, 추상적인 취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, 수탁자 위반 등에 따른 강제적 이전과 기업의 자발적 이전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요구됨.
- 비자발적 폐지 금지 규정을 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신설하고, 폐지절차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향후 금융환경 변화 추세에 부합한 종합적인 연금규제 틀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진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수단 및 강도를 설정할 필요